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목 차>

1.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시설기준 강화
2.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정혜영
	담당부서 (과)	농촌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오병석		연락처	044-201-1590
	과장	김신재		이메일	hyjung1205@mail. 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시설기준 강화		
	2.규제조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3.위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3.25.~5.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강릉펜션사고로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은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기준이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7.규제내용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이나 표지, 완강기 등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시설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소비자 등		
	9.규제목표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가능하도록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150㎡이하(평균 객실 2개)의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가스누설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을 설치할 경우 평균 16만원 내외, 150㎡초과(평균객실5개, 3층이상)의 경우 공통시설 외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추가하는 경우 70만원 내외의 비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성적 계산은 어려우나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시설설치 비용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시행규칙 별표3 농어촌관광휴양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p>			
기 본 시 설	<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p>	기 본 시 설	<p>○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능력단위이상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p> <p>○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유도등을 설치할 것</p> <p>○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p>
			난방기 (가스, 기름, 화목, 연탄 보일러 등 연소 난방기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 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
-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3층 이하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피난 유도등이나 표지,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의무화
- 150㎡미만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되, 150㎡이상 사업장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3층이상)설치

* '20년 이후 착공하는 신규사업장건물에 한하여 적용

구 분	기 준	150㎡이하(객실 2개)	151㎡~230㎡(객실 5개)
공통 시설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자동확산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추가 시설		○피난표지	○피난구 유도등
			○간이완강기(3층이상)
합계			

- 농어촌민박에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자체 담당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대책회의('18.12.20)	안전관련 제도개선 의견 반영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의견수렴회의(19.01.10, '19.01.24)	
소방청, 전기·가스안전공사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대책회의('18.12.27)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화산소화기 등 안전시설 추가
	안전강화 제도개선안 서면검토('19.01.07)	
농어촌민박협회, 관련전문가, 지자체 등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9.01.31, '19.02.13)	안전관련 제도개선 의견 반영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설명회('19.02.21)	

3. 규제목표

-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농어촌민박은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업보다 안전규정이 완화되어있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안전기준을 충족
-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로서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어려우며, 숙박업의 기준에 준하도록 시설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기술규제와 관련없음

- 경쟁영향평가

모든 농어촌민박에 도입하는 것으로 경쟁에 영향없음

- 중기영향평가

① 규제 영역	산업안전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은 27,000여개소의 농어촌민박으로 업종의 형태는 한가지이며, 기업현황 분포 파악이 어렵고 매출액 형태가 다양하여 전체대상 표본조사결과로 분석
④ 대상 업종	농어촌민박업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농어촌민박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17년말 기준 26,578개소임 <p>② 표본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 924개소(150㎡미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통해 규제부담비용의 비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용비율(%)= $\frac{\text{규제부담비용}}{\text{평균매출액}} \times 100$ $160,000\text{원} / 11,977,378\text{원} \times 100 = 1.33\%$ · 농어촌민박 948개소(150 ~ 230㎡)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통해 규제부담비용의 비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0,000\text{원} / 26,455,096\text{원} \times 100 = 2.68\%$ ·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이 20%미만으로 현실적으로 규제 준수가 가능하며 이미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화를 적용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음 <p>③ 차등화 대상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150㎡미만과 230㎡미만의 경우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안 마련 · 규제부담비용비율이 5%이내이므로 규제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⑥ 차등화적용 여부	· 농어촌민박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안전기준 강화 적용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농어촌민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규진입장벽 설정하는 규제아님

- 일몰설정 여부

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모든 농어촌민박에 지속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어 일몰설정 하지않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모든 농어촌민박에 적용될 필요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타법사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동시행령 별표5에서 면적별로 갖추어야할 소방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3. 숙박시설

-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예시)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 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제도개선안 설명회 및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안전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안전강화는 소비자의 신뢰 및 만족도와 연관되고, 시설 설치의 비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순응도 높을거라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 영세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50㎡를 기준으로 피난표지와 피난유도등 및 완강기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완강기의 경우 3층이상인 건물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 이상의 면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제도개선안 의견수렴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하였음
- 현행 규정에 따라 반기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안전점검 시 설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집행과 무관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도개선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회의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부분 강화 필요성에 공감

일 자	내 용	참 석 자
'18.12.20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대책회의	지자체 담당자
'18.12.27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대책 회의	소방청, 전기·가스안전공사
'19.01.07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서면검토	법률, 안전, 관련 전문가
'19.01.10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의견수렴회의	지자체 시·군 담당자
'19.01.24		지자체 시·도 담당자
'19.01.31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련전문가, 농어촌민박협회
'19.02.13		농어촌민박협회
'19.02.21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설명회	지자체 및 농어촌민박협회

2. 향후 평가계획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 안전시설설치 기준 강화 후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

3. 종합결론

- 농어촌민박은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련 기준이 다른 숙박업에 비해 완화되어있어 안전에 취약함
-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농어촌민박사업자
활동제목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편익항목	국민의 안전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 어려움
근거설명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사고가 예방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 어려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		
	2.규제조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3.위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3.25~5.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강릉펜션사고로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은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기준이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7.규제내용	새롭게 설치 의무화되는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을 보완하고,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에 대한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소비자 등		
	9.규제목표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가능하도록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안전관련 유지관리 기준으로 특별한 비용 발생하지 않음 ○별표3에 의해 새롭게 설치 의무화되는 안전시설 유지관리기준 및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의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화재사고가 예방되고, 국민의 안전이 증가하는 편익이 발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시행규칙 별표3의2 농어촌민박 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 소방 안전</td> <td style="padding: 5px;"> <p>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할 것</p> <p>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p> <p>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p> </td> </tr> </table>	3. 소방 안전	<p>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할 것</p> <p>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p> <p>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 소방 안전</td> <td style="padding: 5px;"> <p>가. 소화기, 피난유도등(표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작동가능토록 유지·관리할 것</p> <p>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p> <p>다.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p> </td> </tr>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 난방 시설 및 화기 취급 처 안전</td> <td style="padding: 5px;"> <p>가. 난방으로 사용되는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p> <p>나. 화기취급처에는 환기 시설 설치 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p> <p>다.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p> </td> </tr> </table>	3. 소방 안전	<p>가. 소화기, 피난유도등(표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작동가능토록 유지·관리할 것</p> <p>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p> <p>다.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p>	4. 난방 시설 및 화기 취급 처 안전	<p>가. 난방으로 사용되는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p> <p>나. 화기취급처에는 환기 시설 설치 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p> <p>다.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p>
3. 소방 안전	<p>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할 것</p> <p>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p> <p>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p>						
3. 소방 안전	<p>가. 소화기, 피난유도등(표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작동가능토록 유지·관리할 것</p> <p>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p> <p>다.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p>						
4. 난방 시설 및 화기 취급 처 안전	<p>가. 난방으로 사용되는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p> <p>나. 화기취급처에는 환기 시설 설치 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p> <p>다.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 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
-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기준에 있어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새롭게 설치 의무화되는 안전시설인 휴대용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관리 기준 신설
-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에 대한 관리 기준 추가

현 행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관리 기준 ○소방안전기준만 규정	⇒	개 선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누설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유지관리 기준 규정 ○화기취급처에 대한 관리 기준 추가
-----	---	---	-----	--

- 새로운 안전관리기준을 통해 안전시설의 정상작동, 화재예방 조치 등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효과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자체 담당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대책회의('18.12.20)	안전관련 제도개선 내용 반영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의견수렴회의(19.01.10, '19.01.24)	
소방청, 전기·가스안전공사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대책회의('18.12.27)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화산소화기 등 안전시설 추가
	안전강화 제도개선안 서면검토('19.01.07)	
농어촌민박협회, 관련전문가, 지자체 등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9.01.31, '19.02.13)	안전관련 제도개선 내용 반영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설명회('19.02.21)	

3. 규제목표

-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기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에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새로운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 의무화 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 화재에 취약한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의 안전관리 기준을 추가하여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규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안전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기술 규제와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모든 농어촌민박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쟁에 영향 없음

- 중기영향평가

① 규제 영역	산업안전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27,000여개소의 농어촌민박으로 업종의 형태는 한가지이며 기업현황 분포 파악이 어렵고,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표본이나 예비분석표모델 적용 어려움
④ 대상 업종	농어촌민박업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농어촌민박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17년말 기준 26,578개소임 <p>② 정성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과 화재예방 등을 위한 관리 기준으로 공통 적용 필요 <p>③ 차등화 대상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해당 안전시설을 설치했거나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두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차등화 적용 어려움
⑥ 차등화적용 여부	안전관리 기준으로 차등화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농어촌민박 사업자라면 모두가 지켜야하는 규정으로 시장유인적 규제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에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몰설정 어려움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안전에 관한 규정으로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임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타법사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 제4조제7항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위생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안전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 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기준 등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 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제도개선안 설명회 및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안전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안전강화는 소비자의 신뢰 및 만족도와 연관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순응도 높을거라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제도개선안 의견수렴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하였음
- 현행 규정에 따라 반기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집행과 무관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도개선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회의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부분 강화 필요성에 공감

일 자	내 용	참 석 자
'18.12.20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대책회의	지자체 담당자
'18.12.27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대책 회의	소방청, 전기·가스안전공사
'19.01.07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서면검토	법률, 안전, 관련 전문가
'19.01.10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의견수렴회의	지자체 시·군 담당자
'19.01.24		지자체 시·도 담당자
'19.01.31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련전문가, 농어촌민박협회
'19.02.13		농어촌민박협회
'19.02.21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설명회	지자체 및 농어촌민박협회

2. 향후 평가계획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 안전시설설치 기준 강화 후 안전점검을 통해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

3. 종합결론

- 농어촌민박은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련 기준이 다른 숙박업에 비해 완화되어있어 안전에 취약함
-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농어촌민박사업자
활동제목	
편익항목	국민의 안전에 대한 편익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에 관한 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사고가 예방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 어려움
근거설명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에 관한 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사고가 예방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 어려움